

제324회 임시회  
2013. 10. 17.(목)

# 심 사 보 고 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2013. 10. 17.(목)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13년 9월 27일
- 다. 회부일자 : 2013년 10월 2일
- 라. 상정일자 : 2013년 10월 15일

(제3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 가. 제안이유

- 보은군이 대국민 산림 휴양·치유, 체험시설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도유림과
- 우리 도가 산림자원 구성에 적합한 보은군유림을 교환하여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 재산의 취득·처분

#### 《공유재산 교환》

- 교환시기 : 2013. 11. ~ 2013. 12.
- 교환내역 : (도 ↔ 보은군)

(단위:m<sup>2</sup>, 천원)

| 구분       | 소재지                | 면적        | 재산가액    | 비고   |
|----------|--------------------|-----------|---------|------|
| 교환<br>취득 | 4필지                | 1,523,452 | 641,435 | 보은군  |
|          | 보은군 산외면 월평리 산1     | 331,240   | 122,559 |      |
|          | 보은군 산외면 월평리 산3-1   | 492,293   | 197,409 |      |
|          | 보은군 산외면 월평리 산11    | 239,207   | 96,640  |      |
|          | 보은군 산외면 월평리 산19-1  | 460,712   | 224,827 |      |
| 교환<br>처분 | 1필지                | 834,843   | 666,205 | 충청북도 |
|          | 보은군 속리산면 갈목리 산19-1 | 834,843   | 666,205 |      |

※ 재산가액은 2013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변경안은 보은군이 대국민 산림 휴양·치유, 체험시설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도유림과 우리도 산림경영에 적합한 보은군유림을 교환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등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          |       |
|----------|-------|
| 의안<br>번호 | 제549호 |
|----------|-------|

제출연월일 : 2013년 9월27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보은군이 대국민 산림 휴양·치유, 체험시설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바이오산림휴양벨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도유림과
- 우리 도가 산림자원 조성에 적합한 보은군유림을 교환하여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 2. 주요내용

### □ 재산의 취득·처분

#### 《공유재산 교환》

- 교환시기 : 2013. 11. ~ 2013. 12.
- 교환내역(도⇔보은군)

(단위:m<sup>2</sup>,천원)

| 구분       | 소재지                | 면적               | 재산가액           | 비고          |
|----------|--------------------|------------------|----------------|-------------|
| 교환<br>취득 | <b>4필지</b>         | <b>1,523,452</b> | <b>641,435</b> | <b>보은군</b>  |
|          |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산1     | 331,240          | 122,559        |             |
|          |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산3-1   | 492,293          | 197,409        |             |
|          |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산11    | 239,207          | 96,640         |             |
|          | 보은군 산외면 구티리 산19-1  | 460,712          | 224,827        |             |
| 교환<br>처분 | <b>1필지</b>         | <b>834,843</b>   | <b>666,205</b> | <b>충청북도</b> |
|          | 보은군 속리산면 갈목리 산19-1 | 834,843          | 666,205        |             |

※ 재산가액은 2013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서 : 별첨**

####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 관계법령발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
| <p><b>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b>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 <p><b>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b>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
|--|--|
| <p><b>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b>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b>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b>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 <p><b>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b>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li> <li>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li> <li>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li> <li>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li> <li>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li> </ol> |